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5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박희승

안호영 · 김윤덕 · 한병도

신영대 • 이춘석 • 이성윤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40메가와트의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경우에만 분산에너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전력망은 송전사업자 소유로 송전사업자가 스스로 건설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려 하여도 지역 우선 공급은 전기의 물리적 성격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이에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

자 및 배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분산에너지특화 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 설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1호 및 제3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분산에너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의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 1. ------용하는 공간 ·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 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 너지를 말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 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의 효과 등) ① · ② (생 략) 의 효과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신 설> ③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분산 에너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 록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의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8 호의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

	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